

검 토 보 고 서

건 명	논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의안번호	제35호	제 출 자	논산시장(건설과)
제 출 일	2024. 3. 13.	회 부 일	2024. 3. 13.

1. 제안이유

지명위원회 구성·운영 관련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(시행 23.6.11.) 사항을 「논산시 지명위원회 조례」에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지명의 결정 및 위원회 구성 관련 법 조항 개정사항 반영(안 제1조)
- 논산시 지명위원회 구성 정비(안 제3조)
-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명위원회를 상설화로 정비 및 해촉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4조)
- 위원회의 서면 심의·의결 규정 신설(안 제5의2조)

3. 검토의견

-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된 내용을 「논산시 지명위원회 조례」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
-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,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2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